

서울고등법원 2022. 4. 28 선고 2021나2021140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4. 28 선고 2021나2021140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6. 4 선고 2019가합71793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결

담당변호사 권영균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승준

변론종결 2022. 4. 7.

판결선고 2022. 4. 28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6. 4. 선고 2019가합71793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선택적으로,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, 3,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. 1. 22. 접수 제1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. 9. 22. 접수 제25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선택적으로,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4. 15.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, 3,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. 1. 22. 접수 제1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. 9. 22. 접수 제25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“원고승계참가인” 다음에 “(이 사건의 원고)”를 추가한다.
-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, 3행 “갑 제3, 4, 5, 7, 9, 10호증”을 “갑 제3, 4, 5, 7, 9, 10, 12, 14호증”으로 고쳐 쓴다.
-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, 16행 “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”를 “을 제14 내지

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공사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“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”를 “이후 항소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”로 고쳐 쓴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광만, 판사 김선아, 판사 천지성

별지